

해설지

[논리의 감각] 테스트용 1회

1	2	3	4	5	6
(3)	(4)	(2)	(3)	(3)	(5)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변형해서 낸 문제라서 그런지, 몇 번을 보아도 아주 쉬운 것 같기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신지 나중에 시간 내서 피드백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해설을 할 차례이지요.

[1-2] : 2016학년도 국어 B형 변형문제

익숙한 지문이죠.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재판이 어쨌다니 P와 E가 어쨌다니 하며 날마다니는 글자에 혼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어 제시문들이 그렇듯이, 내용을 나누어서 보면 좀 쉽습니다. (1)P와 E의 재판/ (2)‘부관’의 의미/기판력의 의미로 나누어서 보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1)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아직 한 번도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P와 E의 재판에서, 어쨌거나 E는 재판에 이긴 적이 없으므로 P에게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E는 첫 재판에서 승리하므로 계약에 따라 P에게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이해하셨겠지요.

(2) 부관은 계약 사항 중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기한’은 자연과학적인 법칙으로 일어나게 될 일—보통 시간이겠지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한X대 입학처는 가군 정시를 발표해야한다, 혹은 해가 뜰 때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날 죽여도 좋다 등등. 그리고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의미하지요. 내가 서X대에 합격한다면 너에게 피자를 사주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라 제시문에서 파악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기판력은 한 재판이 확정된 판결을 가졌을 때 더 이상 재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땅땅땅 한 재판을 다시 어쩌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설령 그 재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와버려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서랍에서 니 지문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다음에 발견되었다! 해도 재판을 엎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안,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기다려라!’ 등의 판결에서는 새롭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와 E의 소송이 끝났다고 해도, E가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P가 E를 때렸다거나 하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다른 재판으로요.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에 따른 해답 분석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 (1)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판력이 있으니까요.
- (2) 말 그대로 첫 승소만이 유일한 부관(=조건)이지요. 계약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자 확실시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없었습니다.
- (3) 1. 종결된 사건에 대해 기판력이 작용하였다면 새로운 사정이 기판력 작용 이후에 생겨도 이전에 생겼는데 몰랐어도 동일하게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땅땅땅 했다니까요. 새로운 사정이 다른 재판을 열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이는 기판력 작용 시기와 상관없어요.
- (4) 실현되어야 유효한 조건이 정지조건입니다. 헛갈리지 마세요.
- (5) 대우를 써볼까요. 계약의 조항이 미래에 의존한다면? - 그것이 바로 부관이지요.

어떤가요? 지문에서 설명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헛갈리지 않아도 1번 문제와 같은 유형은 문제없이 풀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있으니 시키는 대로 읽고 풀면 됩니다.

2번 문제

- (1)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새로운 소송을 걸 수 있죠. 갑자기 P가 E를 때리면 E는 P에게 상해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 (2) 각기 다른 두 번의 사안을 다루는 재판으로 이뤄집니다. 1-E가 재판에 승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판 2-E가 1의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에서의 재판입니다. 1과 2 사이에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 (3) 각자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재판 1에서는 E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P는 계약이 무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사항은 '한 번이라도 승소해야 수업료를 준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 2에서 P는 E가 한 번 승소했으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겠지요. E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고요.
- (4) 소송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의 조건이 영원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수업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는 평생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지요.
- (5) 항소한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똑같이 심사하게 되므로 P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첫 재판에 대한 기판력을 얻어버리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E가 첫 승소를 거둔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재판 1의 기판력은 2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

정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의 조건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5] : 2016년 LEET 언어이해

혹시 리트라고 해서 쫀 건 아니죠? 그래도 뭐 읽어보면 별 것 없습니다. 그냥 법 관련 비문학 지문이에요. 특이하다면 바로 앞 지문에 이어서 기판력이 한 번 더 나온 정도? 국가배상법이 ‘법률 재판’에 적용되는 경우와 사법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국가배상법의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 국가배상법이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것을 기판력과 심급 제도가 막아주고 있다는 기본 골자 + 법 집행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국가 배상법을 적용하는 한국의 사례(feat.독일)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엎고 엎는 논리적 흐름을 따르고 있으니 가능하면 꼼꼼히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번 문제

- (1) 마지막 줄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법관의 귀책사유로 재판 결과의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 제도 대신 국가배상법을 이용할 수 있지요. A하는 경우 (중)에는 B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B는 A의 부분집합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2) 기판력이 작용하여도 재판의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지요. 기판력은 앞부분에 언급된 최소장치일 뿐입니다.
- (3) 국가배상법 자체가 정부기관의 배상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정부기관이라는 집합에 사법기관이라는 부분집합이 들어있습니다.
- (4) “만일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파악,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법관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재판 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재판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5) 국가배상법 자체에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대법원에서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네요.

집합과 같은 간단한 논리적 도구를 활용하면 비문학 지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집합 명제 이런 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4번 문제

- (1) 독일의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있지만 한국의 국가배상법에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 (2) ‘ㄴ과 달리’는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법관의 위법성을 제끼고도 심급 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판결 불복=국가배상 이라고 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독일은 모든 법안이 아닌 형사 법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ㄴ과 달리’를 봐도, 한국과 독일이

심급 제도 분야에서 다르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3) 독일과 한국 모두 (범위는 다르지만) 위법성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할 때 국가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 외의 경우에는 심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심급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4) 명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명확한 법률을 통해서 국가배상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일이지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도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5)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하급 법원 판결의 위법성은 국가배상법이,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포괄적인 불복은 상급 법원이 맡습니다. 따라서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5번 문제

(1)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독일은 형사법 위반에 한해서 국가배상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A는 패소하지요.

(2) 예를 들자면, 2003년의 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 대신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재판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날짜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판이 기각되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 오류는 국가배상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었던’ 해당 재판에 대한 기판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5) 1994년의 헌법소원은 역울하게 기각되었을 뿐 해당 재판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차례도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와 본문만 읽고 이 재판이 승소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읽고->제시된 내용에 맞춰서->풀면 그냥 쉽게 풀리는 것이 비문학임을 눈치 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제시문의 내용에 맞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부분처럼 보이는 곳은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기초적인 논리로 메꾸시면 됩니다. 복잡한 논리학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6번 문제 : 2016 임용시험 국어 1차

이 문제를 낼지 말지 한참 고민했지만, 딱히 고교생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아서 출제했습니다. 각 단락의 의미만 파악한다면 가능해요. 그느느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만 정확히 읽으셨다면 문제는 쉽사리 맞추셨을 겁니다.

간단히 풀이를 해볼까요. 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분류해보도록 하지요.

ㄱ에 속하는 것으로는 얘야/아들아, 부떼/불상佛像이, 네가/꽃이 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의 형태소가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것이지요.

ㄴ에 속하는 것으로는 오너라/가거라 가 있습니다. 오너라. 가너라. 하여라. 등등... 음가와는 상관이 없지만 오다- 가다- 하다- 등의 앞 형태소 자체에 따라서 하나씩 따라붙어서 교체가 진행되네요.

ㄷ에 속하는 것으로는 바둑아/님하, 너는/그분께서는, 그와/친구랑 이 있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 는 높임을 의미하는 고대 중세 국어의 형태소이지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바둑하와 님아 라고 해도 어색하긴 하지만 상관이 없으니 이는 의미에 따른 것입니다. 너는/그분께서는 은 본문에 예시로 나오다시피 했고요. 그와/친구랑 은 조금 애매한데, 그랑/친구와 로 변환해도 말이 된다는 점에서 랑/와 는 결국 아/하처럼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뿐 앞 형태소에 따라가거나 음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표에 맞게 충족하는 것이 (5)입니다.

긴 해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급 조절을 적당하게 잘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열심히 문제를 냈고, 최대한 많이 해설을 썼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시시하다, 혹은 해설이 불친절하다, 아니면 굳이 설명을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된다— 등의 피드백을 주신다면 참고해서 다음 문제모음에서는 좀 더 작업하기가 수월할듯합니다. 그 외의 다른 질문이나 피드백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흠, 이걸 쓰다 보니 벌써 한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잘 자요. 조만간 또 봅시다.

[논리의 감각]